

강원도립대학교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

(제정) 2005-03-08 규정 제156호

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49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“대학 국가근로장학 제도” 시행에 따른 본 대학 국가근로장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3>

제2조(명칭)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은 “강원도립대학교 국가근로장학 제도 (이하 “본 제도” 라 한다.)” 라 한다. <개정 2016.4.25>

제3조(운영관리) ① 본 제도의 실시에 따른 근로대상 기관의 선정, 근로인원 및 장학생의 선발기준 등 제반사항은 총장이 매 학년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.

② 근로장학생의 지도관리 책임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장과 당해 근로부서장에게 있으며, 교학처장은 근로장학생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위하여 전체 근로장학생을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6.4.25>

③ 교학처와 당해 근로부서에서는 근로장학생 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4.25>

제4조(근로장학생 선정 기준) ① 본 제도의 수혜대상은 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한다. <개정 2010.5.3>

1. 기초생활수급자 <신설 2010.5.3>

2. 차상위계층 <신설 2010.5.3>

3. 가족의 연간 소득이 “세대당 평균소득”에 미달하는 자 <신설 2010.5.3>

4. 가족의 연간 소득이 “세대당 평균소득” 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(다만, 이 경우는 대학별 배정인원의 30%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.) <신설 2010.5.3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“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”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
③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의 면제·감액의 대상이 되는 학생도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. <개정 2010.5.3>

제5조(근로장학생 선정 절차) ① 근로장학생을 배정받고자 하는 대학 내·외 시설의 장은 교학과에 근로장학생 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삭제 <2010.5.3>

③ 공고된 일자리에서 근로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과에 근로신청을 한다.

1.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

3. 기타 본 대학이 정하는 서류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근로장학생을 선정한다 <신설 2010.5.3>

⑤ 전공관련 시설 중 산업체(창업보육센터 등 교내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)에서 근로하는 학생을 25%이상 선정한다. <신설 2010.5.3>

제6조(근로기간 및 시간) ① 근로장학생의 근로기간은 학기 중을 원칙으로 하되, 본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등 사정에 따라 방학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.

② 근로시간은 본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, 주당 10시간에서 20시간 이내로 한다. 단,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장학금 산정) ① 근로장학생의 시간급 지원금액은 노동부가 고시하는 매년도 시간급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,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3>

② 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, 매월 지원금액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단, 제6조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월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월정액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 <개정 2010.5.3>

③ 근로장학생의 자원에 의하여 근로를 그만 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월 미만 단위로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국고지원금의 관리) ① 본 대학에 교부된 근로장학 지원금은 산학협력회계의 별도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한다. <개정 2010.5.3>

② 근로장학 지원금의 집행 실태를 학기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10.5.3>

③ 매년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교부된 대학지원금의 집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0.5.3>

부 칙(2005. 3. 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3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